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96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 등	3
2.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 추가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27.
3. 회 부 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의 참여 보장·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의 경우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률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

데 현행법의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청년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등

☐ 개정안은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청년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의 일정 비율 이상,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제7항 및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⑤ (생략)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성별을</u>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성별을</u>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 ----- ----- ----- ----- ----- ----- . 이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u>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u>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

현행	개정안
대) ①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u>위촉직 위원</u>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u>위촉직 위원</u>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u>위촉직 위원</u>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전체 위원 정수의</u>----- ----- ----- <u>전체</u> <u>위원 정수의</u> ----- ----- ----- <u>전체 위원 정수의</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청년기본법」 제13조¹⁾는 청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

- 1)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①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①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③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며, 제16조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

□ 아울러 「청년기본법」 제15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³⁾

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3)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위원회
2.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2.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 그런데 현행법령상 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 및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청년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전체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위원회에 대하여 청년 또는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안 제15조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전체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규정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현행 규정상으로도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⁴⁾에 대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고, 전체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할 경우 당연직 위원을 둔 위원회는 현실적으로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둘째, 안 제13조제7항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는 실무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모두가, 전문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 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청년 관련 위원의 비율을 오히려 낮추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당연직 위원을 둔 위원회에 대한 개정안 적용 시의 혼선 가능성 및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국가산학협력위원회,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 추가

-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5.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4조의4⁵⁾는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로 ①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②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③

5)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⑤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4년 10월 기준 1개의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14개의 시·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임.

<청년지원센터 현황>

연번	구분	센터명	인원	연번	구분	센터명	인원
1	중앙	중앙청년지원센터	13	9	경기	경기청년지원사업단 (경기청년지원센터)	16
2	서울	서울광역시청년센터	20	10	강원	강원청년센터	5
3	부산	부산청년센터	9	11	충북	충북청년희망센터	5
4	대구	대구광역시청년센터	12	12	충남	충청남도청년센터	4
5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13	13	전북	전북청년허브센터	6
6	광주	광주광역시청년센터	23	14	전남	전라남도청년센터	6
7	대전	대전청년내일센터	20	15	제주	제주청년센터	10
8	세종	세종청년센터	16				

(자료: 국무조정실)

- ☐ 그런데 청년의 경우 법률적·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법률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청년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이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 지원”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청년이 청년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지원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법률상담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102만건의 상담⁶⁾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한 법률상담도 기존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현재도 청년지원센터가 법률상담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연계되도록 안내하고 있고,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로 법률에 명시할 경우 전국

6)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실적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법률상담	법률구조(소송대리 등)				법률구조금액
		소계	민·가사	행정·헌법소원	형사	
2019	1,399,103	183,519	167,808	231	15,480	49,484
2020	1,277,453	150,044	138,876	122	11,046	54,414
2021	1,184,692	142,855	131,484	118	11,253	66,861
2022	1,107,880	114,982	101,800	87	13,095	57,241
2023	1,015,138	121,829	107,626	70	14,133	80,092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2024 법률구조연감」, 2024.6.)

모든 센터에 전문인력을 일괄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재정 여건과 상담 수요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기획재정부는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⁷⁾, 마을번호사⁸⁾ 등을 통해 이미 지원 중이고, 다양한 연령층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축적된 기존의 법률상담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률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7)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

8)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번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